

## 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### 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인력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계획 중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변경명령에 따라 실시계획 중 물적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잘못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의약품생산업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甲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.
- ㄴ.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감염병 연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.
- ㄷ. 일본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51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.
- ㄹ.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방송업체에 근무하는 「국가기술 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-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ㄴ. 주무부장관의 비축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ㄷ. 비축대상물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- ㄹ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업체 비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5. 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A 방송사에 종사하는 자이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고, 지정 당시 甲은 인력의 참여 협력에 문서로 동의하였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방송사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甲에게 참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A 방송사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.
- ④ 甲이 협력 요청에 따라 3일간 인력의 참여 협력을 한 경우 甲에게 식비·숙박료·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을 발령한 주무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.
- ② 도상훈련의 경우에 연(年) 10일간 훈련이 가능하다.
-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.

문 7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정부연습은 (가) 이/가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(나)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(다) 이/가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(라)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
(가)(나)(다)(라)

-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①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국무총리    | 대통령  |
| ② 국무총리    | 대통령  |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
| ③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
| ④ 국무총리    | 대통령  | 국무총리    | 대통령  |

문 8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,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국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·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.
- ③ 훈련대상물자 중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훈련이 끝난 당시의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.
- ④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문 9. 다음 사례에서 ㉠ ~ ㉢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, 갑자기 A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B 병원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, 丙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2021. 5. 14.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. ㉠ 이때 훈련실시명령은 B 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하였다.

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되자, ㉡ A 광역시의 시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2021. 5. 8. B 병원의 장 丁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였다. 이후 丁은 인력훈련통지서를 甲과 乙, 丙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인 2021. 5. 14.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, ㉢ 丙은 현재 국외여행 중임을 이유로 해당 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丁에게 신고한 후 해당 훈련에 불참하였다.

훈련실시일에 甲과 乙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, 훈련에 제출된 의료기기가 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.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丁은 이를 보상받고자 2021. 6. 10.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㉢ 한편, 甲과 乙에게 훈련 당일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다.

-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
| ① ㉠, ㉡ | ② ㉠, ㉢ |
| ③ ㉡, ㉢ | ④ ㉢, ㉣ |

### 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.
- ㄴ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ㄷ.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서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분과위원장이 된다.
- ㄹ. 중앙민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시·도협의회, 시·군·구협의회, 읍·면·동협의회를 각각 둔다.

- 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ㄱ, ㄴ    | ② ㄷ, ㄹ    |
| ③ ㄱ, ㄴ, ㄷ | ④ ㄱ, ㄴ, ㄹ |